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적정성 판단보고서

1. 고객유	여
--------	---

고객명	고객유형	
생년월일 및 나이	미성년자/고령/초고령 구분	

2. 고객이 거래하고자하는 장외파생상품명 및 위험등급

장외파생상품 위험듕급 설명

I 단계-주의: 원본 이상의 손실은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(이자율스왑, 옵션매수)

Ⅱ단계-경고: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(통화선도, 통화스왑)

Ⅲ단계-위험: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거래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상품으로서 Ⅰ,Ⅱ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

3. 투자자정보 확인서 응답결과

항목		투자자정보 확인서 응답결과		
1	「투자자정보 확인서」의 3.1번 문항 거래목적-위험회피 목적 여부	예 🗆	아니오 🗆	_
2	「투자자정보 확인서」의 4번 문항 위험에 대한 태도-기대손실 감수 여부	예 🗆	아니오 🗆	-
3	「투자자정보 확인서」의 5.2번 문항 거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 이해 여부	예 🗆	아니오 🗆	-
4	「투자자정보 확인서」의 5.3번 문항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따른 적합 여부	예 🗆	아니오 🗆	-
(5)	「투자자정보 확인서」의 5.1번 문항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	하 🗆	중 🗆	상 🗆
6	「투자자정보 확인서」의 2번 문항 재산상황(총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비중)	5% 미만 🗆	5% 이상 ~ 10% 미만 □	10% 이상 🗆
7	「투자자정보 확인서」의 6번 문항 장외파생상품을 취득·처분한 경험	1년 미만 🗆	1년 이상 ~ 3년 미만 □	3년 이상 □

4. 투자자정보 분석결과

コがニコ	거래가늉 상품의	
고객능급	위험등급	

5. 적정성 판단결과 및 이유

적정성 판단 결과	적정 🗆	부적정 🗆	이유





⁻ 고객등급에 따른 적정한 상품은 '장외파생상품상담용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4. 투자자정보 분석결과

고객확인

- 법인인 경우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한하여 본 적정성 판단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본 적정성 판단보고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(대리인 수령 불가).
- 이 보고서는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전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이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,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 공하는 보고서입니다.
- 이 보고서는 제출하신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. 본 서류에 제공한 정보는 투자조언 등의 근거로만 사용할 것입니다.
- 고객이 제공한 투자자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투자자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본 자료를 (수령)하고 자료의 (내용)에 대해 (설명)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자 년 월 일

고객명	(서명/인)
대리인	(서명/인)

은행확인

- 이 보고서는 하나은행이 고객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.
- 고객이 기명 날인(또는 서명)한 본 보고서 사본에 하나은행은 기명 날인(또는 서명)을 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. 고객이 기명 날인(또는 서명)한 본 보고서 원본은 하나은행이 보관합니다.

작성일자 년 월 일

주식회사 하나은행	지점/부서명
담당자 (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)	(서명/인)



